

어린이놀이시설 FAQ 모음집

- 어린이놀이시설 제도, 안전검사 이행 등 안전관련 -

2021. 2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는 놀이기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해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2』에는 어린이놀이기구로는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뽕뽕이, 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물이용 놀이기구 등이 해당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인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확인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체력단련시설, 특별한 이용을 목적으로 제조·설치된 가정용의 놀이기구, 비상시 이용하는 탈출용 미끄럼틀, 동력을 이용한 기구 등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신청 후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는 설치검사 처리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으나, 안전검사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는 신청 후 7~10일 정도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어린이놀이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은 아래 3가지로,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철거가 불가능 합니다.

-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 어린이집 : 5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1)
- 유치원·학교 :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 교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8조)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 대한산업안전협회
-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
-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안전검사연구원
-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 FITI시험연구원
- 한국시설물안전관리단
- 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놀이시설정책소개'- '안전검사기관 참조>

□ 어린이놀이기구 설치근거와 놀이기구의 의무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주택법 등 18개 개별 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법령의 법 목적 실현에 부가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2008. 1. 27.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각 법에서 놀이기구 설치 시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기구는 '6세 미만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대근육 활동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기구의 경우 설치의무 대상이 150세대 이상 공공주택으로 되어있는데 150세대 미만은 철거 가능 하나요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100세대 이상 주택 단지는 기준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 ※ 주민공동시설 :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보금자리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등
- 어린이놀이기구 설치기준은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세대당 2.5㎡의 주민공동시설이 필요하고, 150세대 이상인 경우 어린이 놀이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존주택은 제55조의2 모든 조항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행정절차를 통해 제55조의2조항 적용이 가능합니다.(문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100세대 미만 :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미해당
-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 세대당 2.5㎡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필요
- 150세대 이상 :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해당

□ 어린이놀이기구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설치검사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12조에는 설치자가 어린이놀이기구를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자(시공사)가 설치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08.1.27)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 설치검사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부칙<제10989, 2011.8.4.> 제2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또는 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 단지도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12조에는 설치자가 어린이놀이기구를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예정이라도 어린이놀이기구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 범위내에서 놀이기구의 종류와 수량, 지역 등을 감안하여 검사기관별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품 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안전진단 수수료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일반 놀이기구	그네	42,700	68,000
	미끄럼틀	61,800	68,000
	정글짐,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철봉, 늑철, 늘임봉, 구름다리 등)	42,700	68,000
	공중놀이기구	61,800	68,000
	회전놀이기구	61,800	68,000
	흔들놀이기구	47,500	68,000
	조합놀이대	90,600	68,000
	실내놀이기구	66,600	68,000
	기타 놀이기구(모래집, 평행봉 등)	42,700	68,000
물이용 놀이기구	조합놀이대형	90,600	68,000
	버킷형	37,400	68,000
	기타단품형	36,000	68,000
	물순환시설	77,700	68,000
표면재	모래, 고무, 포설	33,000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의 검사 수수료 참조 >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주택법에 놀이기구의 종류와 수량을 정해 놓았나요?

- 주택법에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와 수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놀이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감시원 신청은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기구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감시원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지역의 관리감독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교육장)에 안전감시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설치된 움직이는 작은 미끄럼틀이나 그네도 설치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

-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가 놀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자율안전확인기준」에 완구로 규정한 소형 미끄럼틀, 작은 그네 등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니며, 안전관리 의무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놀이기구 VS 완구>

구 분	어린이놀이기구	완구
안전확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설치방법	설치업자가 설치	개인이 구매 설치가능
고정여부	주로 고정식	주로 이동식
설치장소	학교, 공원 등 공공장소	어린이집, 가정
예 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 1천만원 이하로 시설개선비보다 저렴한데, 벌금을 납부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일반적으로 행정벌의 적용에 있어서 의무위반 시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계속하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하여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새로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가 있고, 또한 계속해서 법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이후에는 더 무거운 형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일반적 경향입니다.
- 안전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하루 빨리 시설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검사 완료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중 놀이기구와 바닥재 설치를 다른 회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설의 일부만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놀이시설의 하강공간, 최소공간 및 충격구역 등 안전성 검사는 개별 놀이기구별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기준*에 '놀이터' 단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0-10호)

- 다만, 안전검사 완료 후 놀이기구 또는 충격흡수용표면재(바닥재)를 추가 설치한 경우 추가 시설검사가 가능하며, 이런 시설의 경우 기 설치한 시설의 정기시설검사 도래 시, 추가 놀이시설(검사비 감액)을 포함해 전체 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검사가능 사례 〉

- 놀이기구만 또는 충격흡수용표면재(바닥재)만 설치된 상태에서 검사 불가능
-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 일부를 제외하고 신청한 경우 검사 불가능

유형	검사 신청	검사 실시
1	놀이기구 전체 (○) + 바닥재 (○)	검사 가능
2	기존 합격시설 + 놀이기구 또는 바닥재 추가	
3	놀이기구 일부 (○) + 바닥재 (○)	검사 불가능
4	놀이기구 전체 (○) + 바닥재 (x)	
5	놀이기구 (x) + 바닥재 (○)	

노후된 민간의 영세 놀이시설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는 없나요?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지원 조례등에 의거 일부 비용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범위가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 전체 놀이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1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제16조의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해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나, 예산 지원 가능여부는 놀이시설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에 체육기구(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설치가 가능한가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체육기구 설치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설치하는 가능하나, 검사대상 놀이기구와 안전거리 유지가 되어야하고, 관리주체는 어린이들이 놀이시설 이용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키즈카페 등 신종 실내 놀이공간에 존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도 안전관리의무 적용 대상인지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에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적용대상 장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주상복합, 종교시설,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시설, 목욕장업 영업소, 도로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 영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놀이제공 영업소**

- 이 중 키즈카페와 같은 실내놀이터는 ‘놀이제공 영업소’ 등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으로, 놀이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검사, 교육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 키즈카페 내 유기기구의 경우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의무 이행

□ 설치검사 신청을 위해서 시설번호가 필요합니다. 시설번호를 부여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5.9.22)으로 설치검사 시 신청서에 반드시 시설번호를 기입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시설번호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이 등록이 되어야 되며, 놀이시설 등록은 놀이터 소재 관리감독기관 (지자체,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교육청 소관(학교·유치원·학원), 지자체 소관(교육청 소관 외 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21.6.23. 시행) 시행일 이후에는 신고 서식(시행규칙 개정 예정)에 따라 신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며, 지정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즉, 안전관리지원 기관 신청은 시도(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되며, 지정 기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법 시행규칙 별표5)은 같습니다.

< 지정기준 >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일 것
-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별 전담기구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갖출 것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상담 업무를 수행한 자 2명 이상
-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위해·위험의 예방 업무,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의 교육 업무, 피해보전사업 관련 업무 및 통계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자 각 1명 이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대리인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고, 동법 제20조제1항에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 안전관리의 업무 중 일부 인 안전점검을 대리하는 자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태료의 부과 범위를 확장하는 결과로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대리인에게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무조건 법 제29조의 벌칙 대상에 해당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는 동법 제13조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금지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으로,
-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벌칙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게 하였을 때’ 벌칙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공원의 놀이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는 관리주체임과 동시에 관리감독기관입니다. 만약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놀이시설 중 지자체가 관리주체인 동시에 관리감독기관인 경우 관리주체와 관리감독기관의 법적 지위가 서로 다르므로, 과태료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하고, 관리주체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교육감이 관할하는 구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사업구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사업구역은 교육감 및 타 지자체 관할 지역에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거주하지 않는 15세의 청소년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쳤을 경우 보험처리 대상이 되는지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의 보험가입은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등을 정하고 있으나, 보상을 담보하는 피해자(계층, 지역, 연령 등)가 누구인지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청소년이 놀다가 다칠 경우에도, 관리주체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배상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관리감독기관의 허가 없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무단 출입하여 모래 시료채취, 각종 서류 등을 요구하고 학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지 여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교육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리주체에게 자료제출 및 보고를 요구하고 어린이놀이시설·서류·장부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게는 관리주체에게 자료제출 및 보고 의무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감독기관의 위임행위 또는 관리주체의 사전 협조요청 없이 현장조사를 위해 학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현장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놀이기구가 없는 놀이터도 설치검사와 보험가입을 해야하는지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어린이놀이시설로 볼 수 없어, 단순히 놀이터에 모래나 고무매트 등 바닥재만 있을 경우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설치검사 전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보험가입은 관리주체인 경우 인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조항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강제조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미래의 예견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검사 이전이라도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기존 학교(또는 아파트)에서 교육을 받고 발령받아 왔는데, 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이 지났다면 교육을 새로이 받아야 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주기는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항제2호에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자가 교육이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에서 동일한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2년 동안 교육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다만, 안전관리자가 변동되었으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관리자 변경 신청 및 완료 후에 기존에 교육받은 안전관리지원기관에 공문 등으로 교육이수 정보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 현재 아파트 전체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소유자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별도로 어린이놀이터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 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별표7에서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아파트에서 가입하신 보험이 위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험 종류와 같고 시행령 별표7 보장내용과 보상한도액을 만족한다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등록 후 “승인요청 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승인은 어디서 하며, 승인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승인은 관리감독기관인 해당 시군구(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 학교, 유치원, 학원 놀이시설 : 교육지원청
 - 그 외 놀이시설 : 지자체(시·군·구)
- 등록 신청 후 “승인요청 중”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남아있을 경우 소관 관리감독 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 완료된 시설은 “놀이시설 상세 정보 화면”에 신청한 안전관리자 지정일자 및 보험가입 일자가 입력되어 있다면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공원 전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놀이기구와 관련된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가?

-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원 전체에 가입한 보험이 공원 안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보험관련 규정(시행령 별표7)에서 정한 각종 조건을 만족한다면 별도의 보험가입은 불필요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안전교육 정보조회 및 보험가입내역 등록을 위해 놀이시설을 조회하려고 하는데, 놀이시설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라는 알림창이 뜹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놀이시설은 운영 중인 놀이시설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관 관리감독기관(지자체, 교육지원청)에서 놀이시설을 삭제했거나 이용금지(임시폐쇄)로 변경 했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니, 해당 관리감독기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놀이시설 조회는 시설명, 주소, 시설번호로 가능하나 주소는 정확한 주소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니, 가급적 시설명 및 시설번호로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을 이수했으나 시스템에 미검사 또는 미이수로 되어있습니다. 결과는 누가 입력해야 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에 대한 결과 입력은 검사기관,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결과 입력은 검사합격증 및 교육이수증 발급 후 즉시 입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입력이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검사 및 교육기관에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놀이시설정책소개 > 안전검사기관 안전관리지원기관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보험가입 후 가입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보험등록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정상 저장되었는데, 놀이시설을 조회해보면 신청이 되지 않고 다시 “등록”버튼이 다시 활성화 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런 현상은 보험가입내역 등록 시 보험증권 첨부파일의 이미지 형식이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보험이미지 첨부 시 이미지 형식을 jpg, gif, png, pdf 파일로 변경해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결과는 교육기관(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므로, 관리주체는 별도로 시스템에 입력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 교육기관에 입력을 요청하면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안전교육 기관 및 교육일정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지원기관별(34개 기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안전관리지원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해주시고,
-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교육일정을 게시하고 있으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cpf.go.kr)-고객참여마당-안전교육일정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신청 화면에서 “안전관리자 지정일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전교육을 받은 일자를 입력하면 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시스템으로 신고 시 “안전관리자 지정일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일자가 아닌 안전관리자 업무를 시작한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안전관리자는 지정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명, 주소, 관리주체 정보, 놀이기구 등 놀이시설 정보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면 되나요?

- 관리주체에게는 시스템 로그인 ID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직접 놀이시설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놀이시설 정보수정은 소관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관리자가 수행하고 있으니, 관리감독기관에 시설 정보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입니다. 보험등록 또는 안전관리자 등록(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ID(비번)를 잃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ID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에 부여됩니다. 관리주체(초등학교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는 별도로 ID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등록 또는 안전관리자 등록(변경)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접속 후 놀이터를 시설명 등으로 검색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놀이시설현황 > 놀이시설 조회 >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등록·변경 신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을 등록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시설번호도 부여받았는데, 조회를 하면 등록된 놀이시설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최초로 놀이시설을 등록할 경우 바로 운영인 시설로 등록이 되지 않고 임시등록으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운영여부를 전체로 변경하고 조회를 해야 검색이 되며,
- 등록된 놀이시설이 법 적용이 되지 않는 적용미대상 시설(예, 자연마을, 기타 등)인 경우 검색조건에 설치장소를 전체로 변경하고 조회를 해야 검색이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또는 보험가입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정보를 잘못 입력해서 수정하려고 하는데 승인요청중이라는 문구만 보이고 재신청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관리주체가 시스템을 통해 안전관리자 및 보험을 등록하고 저장하면, 관련정보는 소관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으로 신청내역이 전송됩니다.
-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신청 정보를 삭제해야 다시 등록 버튼이 활성화 되니, 놀이시설 소관 관리감독기관에 삭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 교육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안전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아니므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이수한 사이버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놀이기구 여부 확인 및 안전인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놀이기구 여부* 확인 및 안전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기구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에 정의

□ 어린이놀이기구와 관련된 개별법 및 안전관리 의무는 무엇인가요?

- 환경보건법(환경부) : 어린이놀이기구 활동공간 위해성 검사
- 물환경보전법(환경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신고 및 수질검사
- 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 :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 소독의무
 - 식품접객업소, 병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주택 등 해당
- 식품위생법(식약처) : 식품접객업장 내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신고
 - 식품접객업자 중 영업장 내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시 설치검사 합격증 제출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자 교육은 오프라인(집합교육) 교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자 교육은 오프라인(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교육 : 안전관리지원기관 34개 기관
 - 온라인 교육 : 안전관리지원기관 중 사이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4개 기관
-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시스템 > 고객참여마당 > 안전교육일정 참조

□ 어린이놀이기구 내 일부 놀이기구가 안전검사에 불합격 받았을 경우 불합격 놀이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은 이용가능한가요?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검사(설치, 정기시설검사)는 놀이기구 단위로 검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놀이기구 일부가 불합격 받을 경우 시설 전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검사에 합격하여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사정에 의해 일부 놀이 기구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경우 검사를 다시 받아야되나요?

- 안전검사에 합격을 했다하더라도, 놀이기구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재 설치하는 경우 재설치 시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해 놀이기구가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검사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관은 어디인가요?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re.kr, 02-2102-2500)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www.ktc.re.kr, 1899-7654)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아파트 놀이시설을 장기간 '이용금지 상태'로 두어도 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시설의 경우 이용금지 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하고,
- 그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놀이시설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